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445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11. 25.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신주 인수대금 125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낙원지점에 개설된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나. E의 대표이사인 F는 2010. 11. 26. 위 납입된 신주 인수대금 125억 원을 피고 발행의 자기앞수표 86매로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 수표들을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D에게, D은 G에게 각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수표들을 교부하였다.

다. G이 수령한 위 자기앞수표 86매 중 일부인 아래 표 내역의 자기앞수표 9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가 H를 통해 원고의 남편 I에게 교부되었고, 원고는 I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권종	매수	발행은행	지정	발행번호	발행일자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J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K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L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M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N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O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P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Q	2010. 11. 26.
일억원정	1	피고	낙원지점	R	2010. 11. 26.
총 매수	9매	합계 : 9억 원			

라. E는 2010. 12. 16.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지급제시하였으나, D은 위 수표들에 대하여 피고에 도난신고 및 사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수표들에 대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E는 2011. 4. 6. 피고를 상대로 위 자기앞수표 86매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1가합328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05340 판결).

바. 원고는 2013. 7.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73호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이유로 수표금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10. 12. 17.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8. 16. 피공탁자를 원고와 G으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이 사건 수표금 9억 원을 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3224호). 사.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3. 7. 27.부터 피고의 변제공탁일인 2013. 8. 16.까지의 기간 동안 수표금 9억 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89,041원의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5나158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는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된 다음날인 2010. 12. 17.부터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7. 26.까지 이 사건 수표금 9억 원을 보유함으로써 그 법정이자 상당인 119,958,800원(= 9억 원 x 5% x 973/365일)을 부당이득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진정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이 사건 수표는 처음부터 피고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피고의 직원인 S이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 부당이득금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 1)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 등을 상대로 수표금 및 제시일 이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수표법 제39조, 제44조 참조).

2) 이 사건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지급할 자기앞수표로써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 다음날인 2010. 11. 27.부터 10일간(수표법 제29조 제1항)인바, 위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4) 원고는 E가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10. 12. 17.부터 원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관련 소송의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3. 7.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표금의 법정이자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고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지만, E는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득상환청구권자도 아니어서 E의 위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